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0
----------	-----

2023. 6. 23.(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박경숙 의원 등 8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6월 9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경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혁신·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및 안 제3조)
-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안 제8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필요성)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규정하여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도정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절차적 타당성)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다. (법적합성) 충청북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육성 등 각종 사업을 촉진, 도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률과 충돌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가공·처리·저장·구현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설계, 제작·제조 등의 기술

사.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술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전환 촉진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2.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
3.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디지털 전환 촉진 기반 구축사업
5.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관련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전환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나. 디지털 전환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다.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수행
3.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5.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협업 활동의 수행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법인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의 혁신·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비용 발생 요인

-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위원회 운영
- 전문 관계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7조(디지털 전환 촉진지원),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안 제12조(관계기관 지정·운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화 지원
-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위원회 운영비 지원
- 디지털 전환 관계(전문)기관 운영비 등 지원

나. 추계 결과 : 2023년부터 5년간 세출 47억원 정도 소요

- 충청북도 디지털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 200,000천원
-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 4,000,000천원
-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위원회 운영비 : 10,000천원
- 디지털 전환 관계기관 운영비 등 : 5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902,000	1,002,000	902,000	902,000	1,002,000	4,710,000
기본계획 수립			100,000			100,000	200,000
사업화 지원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위원회 운영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관계기관 지장운영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902,000	1,002,000	902,000	902,000	1,002,000	4,710,000
자체 수입	지방세	902,000	1,002,000	902,000	902,000	1,002,000	4,710,000